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12월 15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14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2. 13.(목) 15시이후	담당부서	기술규제조정과
담당과장	오경희 과장(043-870-5550)	담 당 자	홍경태 사무관(043-870-5557)

의류관리기 품목 신설, 수도용 자재·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, 규제해결 나섰다

- 중복·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업종별 협회·단체, 국무조정실,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'18.12.14.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,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'15년부터 시험, 인증,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.

* '규제개혁작업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(총리훈령)'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연 2회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·개선('15~'17, 31건 개선완료, 13건 진행중)

○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,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.

□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·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,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,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.

< 주요개선 사례 >

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에 "의류관리기" 신설

○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는 그동안 '전기건조기' 등 다소 부정확한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있었으나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전안법)」의 관리대상에 '의류관리기' 품목을 신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안전·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

○ "의류관리기"를 생산하는 L사의 경우 해당하는 전안법 관리 품목이 없어 유사 품목인 "전기건조기"로 인증서를 획득하여 판매 중이었으나, 앞으로는 전안법상 '의류관리기'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

< 제조사별 의류관리기 >

제조사	L사	S사	P사
제품 예시			

2 수도용 자재·제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

○ 수도용 자재·제품(예: 계량기, 수도밸드)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(KC)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*을 실시해야 했지만,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된다.

* 위생안전기준(KC)은 조달청 시험기준과 검사항목이 동일하거나 더 많고, 기준치는 동일

< 수도시설(수도용 자재·제품)의 종류 >

수도용 계량기	수도용 폴리에틸렌관	제수밸브	버터플라이 밸브
			

3 쇄석기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기준 합리화

○ 도로, 철로공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제품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,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해진다.

○ 이동식 쇄석기를 통해 파쇄되는 암석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,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.

○ 하지만 선별기를 갖추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에서는 선별기를 대여 및 부착하여 허가받은 후 다시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이런 해로가 해소될 전망이다.

<이동식 쇄석기>



4 기타 개선사례

○ 이밖에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,

○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지만,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등 총 15건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.

□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,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·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고,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【붙 임】 1.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홍경태 사무관(☎ 043-870-55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**

1 기술기준 합리화

1 수도용 자재·물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 (조달청)

○ **(현행)** 수도용 자재·물품(예: 수도밸브, 계량기 등) 등 수도시설 조달시 의무사항으로 용출시험성적서를 제출

- 용출시험성적서는 위생안전기준(KC)과 검사항목 및 기준치가 동일하거나 KC의 검사항목이 더 많은 실정으로 중복시험으로 업체 부담 발생

○ **(개선)** 조달시 용출 시험성적서를 KC인증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

⇒ **(既조치)** 용출시험항목에 대해 유효기간 2년내 KC인증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검사기관에 안내 공문 발송('18.6.25.)

⇒ **[기대효과]** 중복시험 방지로 시험수수료 절감(1.8백만원/건당) 및 인증기간 단축(1개월)

2 쇄석기의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기준 합리화 (국토부)

○ **(현행)** 쇄석기*는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만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

* 큰 돌을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기계

-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분류되는 쇄석기 중 이동식 쇄석기는 선별기가 필수 기기가 아니고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음



< 이동식 쇄석기 >

* 사용자들은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시 서로 맞지 않는 기기(쇄석기: 150t, 선별기 : 70t)를 단순 부착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분리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

○ **(개선)**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선별기가 없어도 신고·검사가 가능토록 개선

⇒ **(계획)** 의견 수렴('18.12), 건설기계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('19)

⇒ **[기대효과]** 선별기 부착 의무 부담 해소로 기업경쟁력 강화

3 의료기기의 전기적 안전성시험 면제범위 확대 (산업부 · 식약처)

○ **(현행)** 의료기기 허가제품은 "전기생활용품안전법"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, 의료기기 인증제품은 전기적 안전성에 대해 중복 시험 실시

*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품목은 등급에 따라 허가·인증·신고로 구분하여 관리

○ **(개선)** 의료기기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 면제

⇒ **(계획)** 산업부·식약처 협의('18.12)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9)

⇒ **[기대효과]** 의료기기 제품의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시험비용 절감

* 의료기기 인증 건수('17년기준 1,777건) ×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법정 수수료(130만원) = 년간 23억원 절감

4 위생용품 생산변경 신고시기 현실화 (식약처)

○ **(현행)** 위생용품*을 제조·가공하려면 '생산전 또는 시작 후 7일이내'에 지자체에 신규 보고

* 세척제, 행굼보조제, 물티슈, 일회용 기저귀,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

- 신규보고 후 제품명, 원료·성분을 변경하려는 경우, '제품생산 전'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제조업체가 정확한 생산일자 예측이 곤란하여 생산관리 등에 어려움

* 제조업체가 변경보고서 제출시 지자체가 수리하는 날짜가 보고일자가 되므로, 제조업체는 정확한 생산일자를 예측할 수 없어 생산차질 발생

○ **(개선)** 신규보고와 마찬가지로 변경보고도 '생산전이나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'에 할 수 있도록 개정

⇒ **(계획)**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9.6)

⇒ **[기대효과]** 위생용품 생산자의 생산관리 부담 완화 및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으로 품질관리 수준 제고

5 선풍기 KS인증(KS C 9301) 적용 범위 확대 (산업부)

○ **(현행)** 현재 선풍기 관련 KS인증 범위는 KS C 9301에 따라 날개의 지름이 20cm이상 75cm 이하로 규정

- 대형 선풍기(날개 지름 75cm 초과) 판매량 증가에 따라 KS 인증 범위 확대 필요

○ **(개선)** KS 인증 적용 범위를 선풍기 날개 지름 기준으로 '20cm 이상 75 cm 이하' 에서 '20cm 이상 90 cm 이하'로 확대하고 종류 추가

⇒ **(계획)** KS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및 개정 범위·내용 확정('19.6)

⇒ **[기대효과]** KS인증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관련 시장 확대

* 국내 선풍기 시장 40%이상 차지 S사 선풍기(날개 75cm) 판매량 : '15) 10천대 → '16) 12천대 → '17) 15천대 → '18.9) 23천대로 크게 증가

6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가능토록 개선 (교육부)

○ **(현행)** 교육환경보호구역*내 병원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가처리 불가

*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

- 병원 등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시 보관, 처리업자의 수거 후 이동 등을 고려할 때 2차 감염 등이 우려

- 지정 폐기물 소각장*이 전국에 15개소에 불과하고,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을 위해 대부분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실정

* 경기 3, 경북 5, 충남 2, 경남·부산·전남·울산·충북 각각 1곳
(전북, 강원, 제주권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없음)

○ **(개선)**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자가 처리할 수 있게 교육환경보호구역內 멸균파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

⇒ **(계획)**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제출('18.12)
※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과제로 선정('18.10.18) 및 병행·추진

⇒ **[기대효과]** 의료폐기물 보관·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예방 및 안전성 확보

2 규제공백 개선

7 부식억제장비의 적합인증 기준 마련 (환경부)

○ **(현행)** 수도망에 설치하는 부식억제장비* 성능인증 기준 부재

* 수도관에 물때, 스케일, 녹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

- 일반수도·전용상수도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능인증*을 받아야 하나, 동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이 없어 납품 불가

* 수도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, 상하수도협회의 단체표준인증, KS인증 등

○ **(개선)**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마련

⇒ **(계획)** 상수도협회 적합인증 기준 개정 예정('18.12)

⇒ **[기대효과]** 기업 판로확보 및 국내설치 사례 확대에 따른 간접 수출 지원 효과

8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품목에 "의류관리기" 신설 (산업부)

○ **(현행)** 전안법 상 "의류관리기"에 대한 품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사품목인 "전기건조기"로 안전인증서를 획득

○ **(개선)** "의류관리기" 품목 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적합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시장 활성화

⇒ **(계획)**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개정('18.12)

⇒ **[기대효과]**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

* 시장규모 :'16)7만대, '17) 12만대,'18) 30만대 예상

< 제조사별 의류관리기 >

제조사	L사	S사	P사
제품 형상			

9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안전인증기준 개선 (산업부)

○ **(현행)** 웨어러블 공기청정기*가 "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"에 따라 現시험 항목에는 부적합하여 시장출시 애로



* 유입되는 외부공기를 차단하여 HEPA필터로 미세먼지를 여과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착용자의 안전보장

○ **(개선)**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인증기준 마련

⇒ **(계획)** 산업부·식약처 협의를 거쳐 인증기준 마련('18.12)
해당 기업과 협의를 거쳐 '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'신청 예정('19.6)

⇒ **[기대효과]** 융합신제품 인증 등을 통해 동 제품군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확대 견인

10 지능형 안전표지 로봇에 대한 인증 마련 (산업부)

○ **(현행)** 도로 위 차량사고 시 안전 삼각대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'지능형 안전 표지로봇'이 개발되었으나, 이에 대한 인증 부재

* 차량 사고 발생 시, 로봇 스스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안전표지(삼각대)를 설치



< 韓 P사, 사물인터넷 전시회 >

-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각 모듈에 대한 복수의 인증을 개별적으로 요구
(4가지 모듈로 구성 : ①표지판 형상, ②광원부, ③구동부, ④통신부)

○ **(개선)** 지능형 안전표지 로봇관련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인증기준 마련

⇒ **(계획)** 해당 기업과 협의를 거쳐 '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' 신청 예정('19.상)

⇒ **[기대효과]** ① 삼각대 활용성을 높여 운전자 안전 제고
②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제정 및 인증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 및 관련 산업 확대

11 건물용 소방펌프 녹 발생 방지를 통한 작동불능 예방 (소방청)

○ **(현행)** 옥내 설치용 소방펌프에 장착되는 임펠러의 재질에 대한 기준 부재

- 부식성 있는 저렴한 주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옥내 설치용 소방펌프가 장기간 미사용으로 부식이 발생할 경우 경우, 화재발생시 미작동 우려



< 소방펌프 >

○ **(개선)**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옥외소화전설비 등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내식성 재료(예: 청동합금 등)를 사용하도록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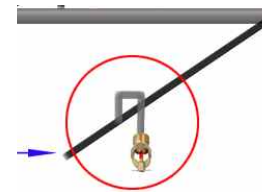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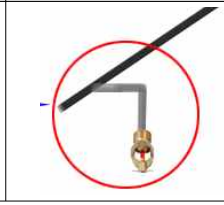
⇒ **(계획)**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소방펌프 화재안전기준 개정('19.하)

⇒ **[기대효과]** ① 화재 시 고착으로 인한 펌프의 미작동, 오작동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

12 소화수조의 물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(소방청)

○ **(현행)** 스프링클러 설치시,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소화수용 배관의 측·하부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질 관리 대책이 부재하여 장시간 경과시 수질악화로 스프링클러 오작동 우려

<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종류>

상향식	하향식	측방식
		

*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('16.1.25)을 제정하여 소방용 수조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, 한 개의 저수조를 식수용과 소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던 것을 소방용 수조 별도 설치

○ **(개선)** 소화수조의 물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
⇒ **(계획)** 전문가 회의를 거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개정('19.하)

⇒ **[기대효과]** 화재시 스프링클러 오작동 방지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사전 예방

3 국제기준 부합화

⓭ 배선기구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(산업부)

○ **(현행)** 배선기구 KS인증 심사기준은 KS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항목 및 검사장비를 요구하여 기업부담 가중

KS표준	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광공업품의 종류, 품질, 생산방법 등에 대한 시험·검사·측정방법 등에 대한 사업표준 ('18년기준 20,459종)
KS인증	제품·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(KS)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('18년기준 품목·서비스수 : 694개)

○ **(개선)** KS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KS 인증심사기준의 검사항목, 검사장비를 삭제하여 KS표준과 내용 일치화

⇒ **(계획)** 배선기구 KS인증 심사기준 개정('18.12)

⇒ **[기대효과]** 관련 KS인증 기업의 시험·장비보유 부담 완화

⓮ 환경표지인증시 페인트 VACs 함량 시험법 개선 (환경부)

○ **(현행)** 환경표지인증 페인트 VACs함량 측정기준 미흡

- 페인트의 환경표지인증 획득하기 위해서는 VACs함량이 기준값 이하이어야 하나, 현재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은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려움

* VACs(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): 독성이 강해 체내 흡수시 뇌와 신경계 손상 우려

○ **(개선)** 해외·유사사례 등 참조하여 현실적·합리적인 VACs 측정기준 마련

⇒ **(계획)** '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'개정 고시('19.12)

⇒ **[기대효과]** 정확한 시험결과 도출 및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⓯ 보청기 기준규격의 KS 부합화 (식약처)

○ **(현행)** 보청기 인허가시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KS·국제표준과 불일치하여 수출기업의 인증부담 등 가중

○ **(개선)** 보청기 기준규격을 KS·국제표준과 부합화

⇒ **(계획)** 「의료기기 기준규격」의 보청기 관련 기준 개정 고시('19.12)

⇒ **[기대효과]** 기준규격과 KS 일치화로 기업혼선 방지, 국내 제품 국제화 기여